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격 재결정 명령제도 법제화〉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21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구 현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4. 17.
3. 회 부 일 : 2026. 4.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의 가격재결정명령은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유형 중 하나로, 합의에 의해 결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새로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각자 가격을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위 가격재결정명령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예규에만 규정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가 가격재결정명령을 통해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시장 경제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중 하나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즉각적으로 시정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III. 검토의견

-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정조치 중 하나로 가격 재결정 명령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u>중지</u>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시정조치) ① ----- ----- ----- ----- <u>중지, 해당 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40조제1항1)은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명명

- 1)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하면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법 제42조제1항²⁾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 제42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중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³⁾는 그 규정의 속성상 다소 포괄성·추상성을 띠 수밖에 없고, 시정명령의 내용은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 행위의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취지에 부합하므로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가 포함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⁴⁾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에서 여러 유형의 시정 조치를 열거하면서 해당 시정조치는 예시이고 그 외에도 위반행위의 시정에 가장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라면 법 위반행위에 비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명령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제4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두5347 전원합의체 판결

4)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이 무한으로 확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권한은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에 부합하는 수준의 조치로 한정됨.

□ 운영지침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시정을 위한 작위명령의 하나로써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피심인에게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새로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각자 가격을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운영지침에 따른 가격재결정명령의 운용방식>

VII. 시정조치 주요 유형별 기준 및 예시

2. 작위명령

라.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

- 1)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를 들어 가) 공정거래법 제40조제1항이 적용되는 명백한 합의가 있고, 나) 최종 심의일까지 그 합의가 종료되지 않아 부당한 공동행위가 유지되고 있으며, 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 공동행위가 관행화되어 있거나 시장구조가 과점화되어 있어 향후 공동행위의 재발가능성이 크며, 라) 가격공동행위의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어, 마) 합의에 의한 가격결정·유지·변경행위의 중지를 구체적인 작위명령으로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독자적 가격재결정명령"을 명할 수 있다.
- 2) 가격재결정명령 방식은 행위중지명령 또는 합의파기명령과 함께 피심인에게 합의에 의해 결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새로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각자 가격을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예시>

1. 피심인들은 ○○○을 판매하는 시장에서 공동으로 ○○○방법으로 합의하여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심인들은 위 1.의 방법으로 합의하여 결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각자 독자적으로 가격을 재결정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결정하여 판매하는 가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피심인들은 향후 3년간 위 ○○○의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인상시점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운영지침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작위명령 중 하나인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벌 기조와 함께 2026년 두 차례(밀가루 담합, 제지 담합)에 걸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 입법적 조치로 보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기대됨.

- 첫째, 법률유보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가격 재결정 명령은 현행법상 명시적인 근거 없이 예규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시정조치의 명확성, 예측가능성과 함께 행정처분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음.
- 둘째, 실질적 시장개선의 효과로서, 단순한 금전적 제재보다 위반 행위를 실제로 시정하는 구조적 시정조치를 통해 현행법이 목적으로 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과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조성 및 소비자 보호를 구현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봄.

- 먼저, 입법 실익의 측면에서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둘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개정안은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여러 작위명령 중 가격 재결정 명령만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그 적정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즉, 운영지침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 외에도 ‘합의파기 명령’과 함께 보조적 수단인 ‘보고 명령’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 외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할 다른 시정조치도 열거하고 있는데, 가격 재결정 명령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특수성이 있는지에 관한 사항임.

- 마지막으로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가격 재결정 명령을 독자적으로 입법화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관찰됨.

특히 미국의 경우 셔먼법에서 법원이 법 위반을 방지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구조적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⁵⁾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적극적 시정조치로서 ‘부당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서의 독자적 가격 재결정’이라는 문언으로 보다 구

5) 권오승, 서정,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 법문사, 제7판(2026), p.838

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은 법률 규정을 통해 시정조치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당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예견하기 매우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음.⁶⁾

문 의 처
02)6788-5109

6) 이와 관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책정되었을 정상가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음(권오승, 서정, 위의 책, p.839)